#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90

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고동진·박덕흠·강승규

송언석 • 서명옥 • 서일준

주호영 • 박충권 • 김소희

조경태 • 박성훈 • 성일종

강대식 · 강선영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

유튜브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하고 가짜뉴스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음.

한편 유튜브,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,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'입법적 기능 미달'로 유튜브상 개인의 명예훼손과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,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'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'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(가짜뉴스)의 유통을 예방, 삭제 및 제한하기 위 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 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 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,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 는,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규정 제정·공표의 대상에 기존의 명예훼손 사항 외에도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(가짜뉴스 등)를 추가함(안 제21조제4호 신설, 제24조제2호).
- 나.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(가짜뉴스 등)와 명예훼손 등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).
- 다.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, 삭제 및 제한하기 위 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, 이

경우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 원회의 명령을 따라야 함(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).

- 라.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통하여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(안 제25조의2제2항신설).
- 마.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하는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,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따르지 않거나,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30조제1항 신설).

##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한 심의

제24조제2호 중 "제21조제3호 및 제4호"를 "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"로 한다.

제25조제1항제2호 중 "제한"을 "제한과 해당 정보의 삭제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제한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 특례 등) ① 위원 회는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,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 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내 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명 령을 따라야 한다.

②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의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 심의	제21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
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	
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
	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
	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
	한 심의
<u>4.</u> ~ <u>9.</u> (생 략)	<u>5.</u> ~ <u>10.</u> (현행 제4호부터 제9
	호까지와 같음)
제24조(심의규정의 제정・공표	제24조(심의규정의 제정・공표
등)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	등)
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	
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	
공표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21조제3호 및 제4호</u> 를 심	2. <u>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</u> -
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	
심의규정	
제25조(제재조치 등) ① 심의위원	제25조(제재조치 등) ①
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	
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	

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 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·정 지 또는 제한

<신 설>

②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. (현행과 같음)
2
제한과 해당 정보의 삭제
3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
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
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
한 삭제 또는 제한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5조의2(정보통신서비스 제공
자에 대한 제재조치 특례 등)
① 위원회는 국내외의 정보통
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21조제
3호 및 제4호에 따른 불법 및
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, 삭제
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
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
명한 수 있다. 이 겨우 국내외

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

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

제30조(과태료) <신 설>

① (생 략)

② <u>제1항</u>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.

②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의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
제30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- <u>③</u> 제1항 및 제2항-----

\_\_\_\_\_

위원회가 부과 · 징수한다.	